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0

발의연월일: 2020. 11. 26.

발 의 자:김희국·강기윤·이명수

김용판 · 하영제 · 김형동

강대식 • 구자근 • 한무경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평가결과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사업은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공계획 등의 수정으로 인해 설계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사항 역시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환경 ·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

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예측된 사항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활동인데,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로, 사후 지하 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조사로 운영되고 있어, 용어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 전평가"와 "지하안전이행조사"로 변경함으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 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면허 또는 결정 등"을 "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 호 및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

제3장제1절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한다.

15의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제15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 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같은 조 제1항・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

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 제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이행조사"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각각 "지하안전이행조사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

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제4장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지하안전이행조사서"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 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4호 및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 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지하 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하 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하 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 평가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 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안전이행조사"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u>지하안전영향평가</u> "란 지하	5 <u>지하안전평가</u>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 <u>면허</u> 또	<u></u> 면허·결정 또는
<u>는 결정 등</u> (이하 "승인등"이	<u> 수리 등</u>
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	
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	
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u>지하안전영향평가</u> "	6 <u>지하안전평가</u>
란 <u>지하안전영향평가</u> 대상사	<u> 지하안전평가</u>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	
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	<u>지하안</u>
는 <u>지하안전영향평가</u> 를 말한	<u>전평가</u>
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7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	
하기 위하여 <u>지하안전영향평</u>	<u>지하안전평가</u>

<u>가</u> 또는 소규모 <u>지하안전영</u> <u>향평가</u>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생략)
- 9. "승인기관의 장"이란 <u>지하안</u> 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u>지하안전영향평가</u>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 13. (생략)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 기 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u>지하안전영향평가</u> 또는 소규 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2. (생략)

<u>.</u>
8. (현행과 같음)
9 <u>지하</u>
<u> 안전평가지하</u>
<u> 안전평가</u>
10.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
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1. <u>지하안전평가</u>
<u>지하안전평가</u>
2.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평가----

② ~ ⑤ (생 략)

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 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 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신 설>

16. (생략)

-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u>지하안전영향평가서</u>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u>지하안전영향평가</u> 대상

② ~ ⑤ (연맹과 같음)
제1절 <u>지하안전평가</u>
제14조(<u>지하안전평가</u> 의 실시 등)
①
<u>지하안전평가</u>
<u>지하안전평가</u>
<u>.</u>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건축법」에 따른 건축
물의 건축사업
16. (현행과 같음)
② 지하안전평가
기하
<u> </u>
<u>하안전평가</u>
제15조(<u>지하안전평가서</u> 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지하안전평가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u>지하안전영향평가</u> 에 관
한 평가서(이하 " <u>지하안전영향</u>
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
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
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
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
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u>지</u>
<u>하안전영향평가</u> 대상사업의 실
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사
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
하기 전에 <u>지하안전영향평가서</u>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지</u>
<u>하안전영향평가서</u> 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

	<u>ス</u>]
<u>하안전평가</u>	
지하안전평가서	
<u></u>	
<u>.</u>	
②	
	<u>지</u>
<u>하안전평가</u>	
지하안전평가서	
<u></u>	
3	<u>지</u>
<u>하안전평가서</u>	
 게16ㅈ/기ᅱ이거더기사이	거ㄷ
제16조(<u>지하안전평가서</u> 의	검토

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에는 <u>지하안전영향평가서</u>를 검 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및 통보 등) ①
- <u>지하안전평가서</u>
②
<u>지하안전평가서</u>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지하안전평가서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 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u>지하안전</u>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
 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
 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
 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
 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
 - ② ~ ④ (생 략) <신 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지하안전평가</u>
서
<u>지하안전평가서</u>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
지하안전평
7}
_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 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 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 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 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 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 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지하안전평가--------지하안전평가--------지하안전이행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u>사후지하</u> <u>안전영향조사에</u> 관한 조사서 (이하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 <u>서</u>"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 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의 조 사항목·조사기간, <u>사후지하안</u> 전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u>사후지하안전영향조</u> 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 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 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

<u>.</u>
②지하안전
이행조사
<u>지하안전이행조사서</u>
③ (현행과 같음)
④ 지하안전이행조사
<u>지하안전이행조사</u>
2-
-지하안전이행조사서
 제22조(재평가) ①
~ (4 名/f) ①
지하안전평가
<u>-191220/1</u>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 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 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 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 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 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절 소규모 <u>지하안전평가</u>
제23조(소규모 <u>지하안전평가</u> 의
실시 등) ① <u>지하안전평가</u>
지하안전평가
<u>지하안전평가</u>
<u>지하안전평가</u>
 지하안전평가-

하다.

-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 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 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 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로 본다.

제4장 <u>지하안전영향평가</u> 등의 대행

제2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사 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 하안전영향평가 및 제35조제1 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 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 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② <u>지하안전평가</u>
<u>지하안전</u>
<u>평가</u>
<u>지하안전평가서</u>
③ <u>지하안전평가</u>
<u>제15</u> 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
<u> 조까지</u> . <u>이 경우</u>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
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u>본다.</u>
제4장 <u>지하안전평가</u> 등의 대행
레이4구/카리시키텀키 드시 레케)
제24조(<u>지하안전평가</u> 등의 대행)
① <u>지하안전평가</u> - <u>지하안전이행</u>
<u>조사지하안전평가</u>
기 뒤 아 기 퍼
<u>지하안전평</u>
<u>가등</u>

- ② <u>지하안전영향평가등</u>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소 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 단)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u>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u>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 성하지 아니할 것
- 3. <u>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u>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

가	돗아	보존할	거
7 '	O i	上口目	- ′ ス'

- 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 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5.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과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u>지하안전영향평가</u> 또는 소규모 <u>지하안전영향평가</u>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생략)

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 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에 따라 <u>지하안전영향평가등</u>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에게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 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4	. <u>지하안전평가</u> <u>지</u>
	<u>하안전평가등</u>
	<u>지하안전평가등</u>
5	. <u>지하안전평가지</u>
	하안전이행조사
	지하안전평가
	지하 <u>단천평가</u>
	<u></u>
	③ (현행과 같음)
제2	5조(<u>지하안전평가</u> 전문기관의
Ę	등록 등) ①
_	<u>지하안전평가등</u>
_	
_	
-	<u>지하</u>
<u> </u>	<u> </u>
-	
(2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 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 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지</u>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u>지하안전평가</u>
	③ (현행과 같음) ④ 지하시기되기
	④ <u>지하안전평가</u>
	⑤ <u>지하안전평가</u>
	 ⑥ (현행과 같음)
	① (包94 ~ ~) ⑦
	·지하안전평가
-17	,
세	26조(결격사유)지
	<u>하안전평가</u>
	<u> </u>

등록할 수 없다.

- 1. ~ 6. (생략)
- 제27조(<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 관의 준수사항) <u>지하안전영향</u> <u>평가등</u>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 다른 <u>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u>
 의 내용을 복제하여 <u>지하안</u>
 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u>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u>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 성하지 아니할 것
 - 3. <u>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u>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보존할 것
 - 4. 자신이 도급받은 <u>지하안전영</u> <u>향평가등</u>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 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 급하지 아니할 것

5. (생략)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u>지하안전평가등</u>
1 <u>지하안전평가서등</u>
지하안전평가
<u>서등</u>
2. <u>지하안전평가서등</u>
3. 지하안전평가서등
4 <u>지하안전평</u>
 가등
5. (현행과 같음)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11404(077 TH 0/W

도지사는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 영업정지기간 중 <u>지하안전영</u>
 <u>향평가등</u>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3. (생략)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u>지하안</u> 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5. ~ 8. (생략)
- 9.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 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 10. (생략)
- ② (생 략)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 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

<u>지하안전평가</u>
,
1. (현행과 같음)
2 <u>지하안전평</u>
<u>가등</u>
3. (현행과 같음)
4 <u>지하안</u>
전평가등
5. ~ 8. (현행과 같음)
9. <u>지하안전평가등</u>
<u>지하안전</u>
<u>평가등</u>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1
기하

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그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 향평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영향평 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 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 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u>지하</u> <u>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으로 본 다.
-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고·조사) ① 국토교통 제 부장관, 시·도지사는 <u>지하안전</u> <u>영향평가</u> 전문기관의 <u>지하안전</u> 영향평가등의 실시현황 등 그

<u> 안전평가</u>	
	-지하안전평가등
	<u>.</u>
<u>지하안전평가</u>	
	<u>지</u>
하안전평가등	
② (현행과 길	<u> </u>
③	
	<u>지하안</u>
<u>전평가</u>	
(4)	
그 시 기 때 그	
- <u>시하안선평/</u>	<u> </u>
 20ス/H コ . ス	 (소) ①
	-^/) ① 지하안전
	<u>시야인신</u> 지하안전평가
<u>'6/I</u> 듯	<u> </u>
· A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지하안전영향</u> 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 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지하안전영</u> <u>향평가</u> 전문기관이 <u>지하안전영</u> <u>향평가등</u>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 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 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지하안전영향평가등</u>의 대 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

<u>지하안전평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정명령)
<u>지하안전평</u>
<u>가지하안전평가등</u> -
제32조(<u>지하안전평가</u>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u>지하안전평가</u>
<u>지하안전평가등</u>
②
<u>지하안전평가등</u>

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 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u>지</u> <u>하안전영향평가등</u> 대행실적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매년 <u>지하안</u> 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u>지하안전영향평가등</u>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은 <u>지하안전영향평가등</u>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 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

지하안전평가
기하안전평
<u> 가등</u>
③지하안전
<u>평가</u>
제33조(<u>지하안전평가등</u> 대행비용
의 산정기준)
<u>지하안전평가등</u>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순영)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지하안전평가서등

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u>지하안전영향</u>
<u>평가</u>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 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 대료 등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48조(비밀유지의무) <u>지하안전영</u> 저 향평가등의 수행, <u>지하안전영향</u> 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 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3
지하안전평가
<u> </u>
4. ~ 8. (현행과 같음)
②
<u>지하안전평가</u>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평
<u>가등지하안전평가서등</u>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ㅎ	하거나 5	드용하	겨서는	= 이	니
된다.	다만, 겨	기하안	전관i	믜를	위
하여	국토교통	등부장 _된	관이	필요	.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	러히	-지
아니ㅎ	하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기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생략)
- 2. <u>지하안전영향평가등</u>을 수행하는 자
- 3. ~ 5. (생략)
-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u>지하안</u> 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 3. (생략)
 -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현행과 같음)
2. 지하안전평가등
3. ~ 5.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1 <u>지하안</u>
전평가
2.・3. (현행과 같음)
4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u>사후지하안전</u> <u>영향조사</u>를 실시하지 아니하 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 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 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 6. (생략)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 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 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 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8. 9. (생략)
- ② (생략)
-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에 따른 <u>지하안</u> <u>전영향평가</u>를 실시하지 아니 한 자
 -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

지하안전이행조
<u>사</u>
5.·6. (현행과 같음) -
7
<u>지하안전평가</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1 <u>지하안</u>
전평가
_
2
지하안전이행조

<u>영향조사</u> 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 지 아니한 자
-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 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u>지</u> 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u>지하안전영향평 가서등을</u> 작성한 자
-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
 조제2호를 위반하여 <u>지하안</u>
 전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지하안전영향</u> 평가등을 대행한 자
-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u>지하안전</u>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 8. 9.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 </u>
3
<u>지하안전평가</u>
4
<u>স</u>
하안전평가서등
<u>지하안전평가서등</u>
5
<u>지하안</u>
<u> 전평가서등</u>
6
<u>지하안전평가</u>
<u> </u>
7
<u>지하안전평</u>
<u>가등</u>
- 0 (취례계 계수)
8. • 9. (현행과 같음)
②

- 에 처한다.
- 1. 2. (생략)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등록을 한 자
-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u>지</u>
 <u>하안전영향평가등</u>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 5. ~ 7.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 조제2호를 위반하여 <u>지하안</u> <u>전영향평가서등</u>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

.
1.・2. (현행과 같음)
3
지하안전평가
4 <u>\textbf{\zeta}</u>
<u>하안전평가등</u>
5. ~ 7.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지하안</u>
<u>전평가서등</u>
4
<u>지하안전평가서등</u>
지하안전평
<u>가등</u>
5

여	사후지하인	전영향	<u> 조사</u> 에
관한	대행계약	을 해당	사업
의	<u>지하안전영</u>	향평가	또는
소규	모 <u>지하안</u> ?	선영향평	<u>가</u> 계
약과	분리하여	체결하	지 아
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 조제3호를 위반하여 <u>지하안</u> 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 17. (생략)
- ④ (생 략)

<u>지하안전이행조사</u>
<u> 안전평가지하</u>
<u> 안전평가</u>
③
1.•2. (현행과 같음)
3
기하안
<u>전평가서등</u>
4. ~ 1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